공고 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2월 16일

신갈동장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신 *훈	신 *훈 1991-03-07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(신갈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2-08